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864

제출년월일: 2017년 6월 2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」('13.1.12 개관)은 공정무역 제품 판매, 공정무역 전시·홍보, 체험교실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나. 해당 분야의 전문성, 노하우,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,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

○ 시설규모 : 252.88m² (판매공간 22.25m², 나머지는 교육·전시 등 활용)

○ 공간구성 : 공정무역 판매, 교육, 전시, 홍보 공간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, 제한경쟁입찰)

나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7.9.1 ~ 2020.8.31)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
 - 공정무역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판매. 홍보
 - 방문객 대상 공정무역 소개 활동 (리플렛 등 제작, 배포)
 - 일반시민 대상 정기적인 공정무역 교육 추진
 -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시 갤러리 공간 조성
 - 기업, 카페 등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홍보를 통한 유통채널 확대
- 소요예산 : 없음 (수익창출형)

다.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

- 공정무역은 제3세계 국가(아시아, 아프리카 등)의 근로자 현황 등을 파악하고, 아동노동 금지, 인권존중 등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해당 경력이 풍부하고, 전문성 있는 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서울시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라 볼 수 없음.
- 지구마을은 현재 공간사용허가에 다른 공정무역 제품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, 전시, 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. 수익형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고 공정무역 홍보, 안내, 교육, 판로지원 등 사업 확대가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 관.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 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5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범위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
- 2.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
- 3.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, 홍보, 캠페인 사업
- 4.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·외 교류 사업
- 5.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 원회가 인정한 사업

나. 예산조치

○ 세출예산 : 0원

○ 세입예산 : 예상 수입 및 사업비 등 계정하여 산출 예정

※ 최근 3년간 지구마을 임대료 수입내역 <단위 : 천원>

연도별	수입금	세부 내역
2014년	201,410천원	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(252.88 <i>m²</i>)
2015년	201,410천원	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(252.88 <i>m²</i>)
2016년	28,972천원	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(22.25㎡)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장호진 (☎ 2133-5486)